

충청북도(본청)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서정호

충청북도(본청)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23년 7월 4일

○ 회부일자 : 2023년 7월 5일

3. 제안이유

- 도청사 주차장 내 공용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을 위해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3 제2항에 따라,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(한국전력공사)의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

4. 주요내용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: 2023. 7. ~ 12.
- 설치장소: 도청사 의회동 옆 민원인 주차장 내 2면
- 사업비: 한전 전액부담
- 사업량: 100kw(콤보1) 급속충전기 2대(기) 구축
- 수행기관: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(구축·설비 총괄 운영)
- 주요내용: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를 위한 충전소 부지제공

□ 참고사항

- 2023년 공용전기차 구축사업 수요조사(한전→도): 4.28.
 - 충전소 설치 관련 업무협의(주변여건, 전력설비 등): 4~6월
- 2023년 공용전기차 구축사업 수요조사 제출(도→한전):5.3.
- 사업대상지 최종 확정(한전→도): 6.28.
- 공용전기차 충전소 구축(설계, 시공, 준공): 7~12월
 - 설계 및 점용허가(7~8월), 시공(9~10월)
 - 준공 및 서비스 시행(11~12월)
- 충전기 설치 예정지



민원인 주차장 내 2면 설치(세부적 위치 설계 시 확정)

○ 충전기 설치기준



5. 검토의견

- 본건 충청북도(본청) 공용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은 충청도청이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'23년 전기차 충전소 구축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충청도청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해 설치부지를 제공하려는 것으로,
- 본건 동의안은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3 제2항(국유재산·공유재산의 임대 등)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0조(사용허가), 제21조(사용허가기간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(사용허가의 방법)에 따라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를 위한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.
-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설비는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사업기간 내에 100kw(콤보1)급 급속충전기 2기를 주차면과 함께 구축하는 것임.
- 충전설비의 구축과 설비 총괄 및 사업비는 한국전력공사가 전액 부담하고 충전소 부지(의회동 민원실 옆 주차장내 2면)만 충청도청에서 제공하는 것이며, 그 외 사용료, 사용기간 등은 관련 법령과 당사자간의 협약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.
- 본건 공용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은 정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보급의 정책에 부합하며, 전기차를 이용하는 민원인 및 도민들이 도청사에서 편리하게 충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- 다만, 현재 도청 내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도청 및 도의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이 있는데 전기차 충전설비의 설치로 민원인 주차장 2면이 줄어들게 되면 민원인들의 주차 불편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므로, 가중되는 민원인 주차불편을 해소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.

- 또한 해당 전기차 충전소는 공용으로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전기 충전소 설치 후 사용 및 유의사항을 정확하게 안내하여야 할 것이며, 도청 내 설치된 시설물이므로 이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 됨.

붙 임: 충청북도(본청)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. 끝.